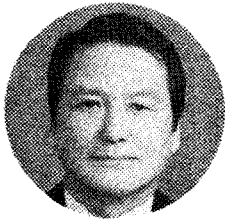


축산업계

소식

농림수산부장관 강현욱전차관 임명



◀ 강현욱
농림수산부
장관

정부는 14대 총선후 내각개편을 단행 3부 장관을 경질 농림수산부장관에 전 경제기획원 강현욱 차관을 임명하였다.

신임 강장관은 경제기획원 이재국장, 예산실장 등 경제분야의 요직을 두루거쳤고 전북지사도 지낸바 있다.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정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납입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 유리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농업용시설은 농지전용의 허가없이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과 간이양어장등 간이 농업용시설은 3년이내의 기간 동안,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할 경우 허가없이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정부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른 전용부담금의 부과기준·납입절차등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위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전용부담금의 부담금액은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분의20으로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시설,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 농·어가등이 설치하는 농업용시설 및 농수산물의 유통·가공시설 등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면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주택건설사업의 시설용지를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100분의50 (국가·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70) 면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림수산부장관은 농지전용의 허가·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전용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확정 한 후 이를 기재한 전용부담금부과명세를 농어촌진흥공사에게 통보함으로써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전용부담금을 수납하도록 하였다.

종축수입추천량 확정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부는 올해 종축수입추천량을 종우 40두, 종돈 1천5백두, 종계 1백만수로 확정했으며 정액, 수정란, 종란은 수입한도량 제한없이 양축가 희망전량 추천해주기로 했다.

축사·창고 60평까지, 주택건축은 30평까지 신고만으로 가능

-건설부, 6월시행예정-

건설부는 지난 3월12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짓는 소형건축물의 신고대상을 확대, 시(市)급이상 도시에서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을 지을때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읍과 면지역에서는 신고만으로 가능한 주택건축대상을 60㎡(18평)에서 1백㎡(30평)로 확대하고, 축사와 창고의 신고대상은 1백㎡(30평) 이하에서 150백㎡(45평) 이하로 늘

렸다.

또한 건축물을 지을때 바닥면적 합계 20㎡미만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때는 사후에 일괄 신고처리토록 했으며 주변건축물에 불편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 건폐율, 용적율, 높이제한, 지하층설치 등에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이 개정안은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규제체계를 개편, 지금까지 시행령에서 일괄적으로 제한해오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지역실정에 따라 시군이 조례를 통해 허용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한편 이 시행령은 관련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5월중 확정,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제 농수축산 과학기술 박람회

'92.11.16~22, KOEX에서

'92서울 국제 농수축산 과학기술 박람회가 11월16일부터 22일까지 농림수산부주최, 한국종합전시장, 한국 농기구 공업협동조합, 한국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등 3개기관의 공동주관하에 한국종합전시장 별관 및 옥외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축산업계의 기술혁신과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신개발농기계 및 시설농업의 자동화 시스템 등 자본집약형 기술영농을 촉진키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관, 농기계 전시관, 농산물 가공기계관, 축산·임업·수산기계전시관등 4개 전시관으로 구성되는

육내관과 대형농기계관, 시설농업설비 및 기자재관, 각도별 특산물 홍보관, 문화행사장 등 4개 옥외관으로 구분, 개최되며, 또 농수축산 과학기술 심포지엄과 여러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기계이용 기술지도도 이번 박람회 기간중에 함께 개최된다.

농수산물 가격 음성정보서비스 이용료 무료

3월부터는 농수산물 가격 음성정보서비스에는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한국통신과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연계, 제공하는 농수산물가격 음성정보서비스에 대하여, 기본통화료 25원에 정보이용요금으로 건당 20~50원씩 부과키로 했으나 농수산물가격 음성정보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91종축능력 검정평가 —국립종축원—

국립종축원(원장 박태진)은 지난 5~6일 양일간 전 연구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91년도에 수행한 종축능력검정 및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이날 평가결과 각 가축의 능력이 향상, 젖소 산유량 6천7백kg, 한우 12개월령 체중 3백76kg, 돼지 일당증체량 9백60g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82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국산계의 산란능력은 2백80개로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됐다.

농축산물 종합 가공공장 기공 —한국냉장(주)—

한국냉장(주)은 지난 3월3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성내리에서 농축산물종합가공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기공식을 갖은 농축산물종합가공공장은 2백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2만3백78평의 부지에 부분육, 포장육 가공시설을 비롯 비축창고 등 연 7천9백평 규모로 오는 '95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건설된 예정이다.

축산종합센터, '94년 완공 —축진기금서 1백75억원 지원—

양축가에 대한 교육훈련기능을 강화하여 UR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축산물 시험장 등 시험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실용화·산업화 하기위한 「축산종합센터」가 오는 '94년4월 안성축협종합연구원내에 세워진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토목공사가 완료될 이 종합센터는 42만평의 부지에 건평 5천4백평에는 연구 등 실험축산강의실, 기숙사, 전산실, 자료실등이 설치되고 부속실습농장과 2천평의 가축품평회, 축산기자재 상설전시장 등 소·돼지 등 각 2백두의 계류시설도 갖추게 된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축협중앙회내에 축산종합개발센터 개설단을 설치하고 단장에 허삼용 축협조합기획단장을 선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목초·사료작물용비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림수산부는 지난 3월20일 현행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 작물 생산업의 분류 중 보통작물내에 사료작물 재배와 목초재배가 포함되도록 하여 법인을 제외한 축산농가가 초지나 사료작물 재배를 위하여 구입하는 비료가격에 대하여는 모두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이미 지난 17일 축산농가가 목초와 사료작물 재배를 위하여 구입하는 비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관련 양축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통가공 식품협회 설립

전통식품업체 및 산지가공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정부의 전통식품가공산업 및 산지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대표 김상근)가 지난 3월16일 농림수산부로 부터 설립을 허가받았다.

사무소: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61의2
송화빌딩 319호

'91축산업 및 종축업등록·허가 현황 농림수산부

부화업 허가 현황

시·도별	부화업수	발육기	
		대수	능력
서울	3	66대	988천개
부산	1	6	72
대구	5	44	931
인천	3	23	272
광주	4(2)	59(13)	241(62)
대전	13	108	1,052
경기	70	784	19,595(45)
강원	7	43	449
충북	17(1)	191(25)	3,572(384)
충남	62(2)	494(4)	14,080(49)
전남	26	236	5,084
전북	20(8)	101(23)	1,376(194)
경북	15	103	2,243
경남	10	94	1,393
제주	1	7	91
계	257(14)	2,359(70)	51,439(734)

※()내 오리수 포함

양계업 등록 현황

구분	시도별	업체수	사육수	
산란계	개소		천수	
	경기	96	4,096	
	강원	2	39	
	충북	2	85	
	충남	5	188	
	전북	3	447	
	경북	3	108	
	계	111	4,963	
	육계	부산	1	35
		광주	2	23
경기		163	1,456	
강원		3	26	
충북		3	33	
충남		17	114	
전북		38	434	
전남		13	280	
경북		5	41	
경남		16	177	
제주		1	19	
계	262	2,638		
산란용중병아리	경기	2	177	
	전북	1	267	
	충남	2	30	
	계	5	474	

'91축산업 및 종축업등록 · 허가 현황

	'90. 12		'91. 12		비율 (B/A)
	업체수 (A)	사육수	업체수 (B)	사육수	
육계 등록	273	2,452천수	262	2,638	96
산란계 등록	108	5,080천수	111	4,963	103
산란용중병아리	8	541천수	5	474	63

등록	239	(천수)	252	(천수)	105
		산란 육용 627 1907		산란 육용 407 2082	
부화업 허가	243	(발육가능력) 43,788천개	257 (14)	51,439 (734)	106

종계업 등록 현황

(산란계 등록)

시도별	종계업수	산 란 종								
		계			종계(PS)		원종계(GPS)		순계(PL)	
		계 수	우	상	우	상	우	상	우	상
대 구	3									
인 천	1									
광 주	1									
대 전	6									
경 기	65	141,758	135,050	6,708	135,050	6,708				
강 원	5									
충 북	20									
충 남	75	78,145	72,390	5,755	68,460	5,355	3,930	400		
전 북	29	140,132	136,823	3,309	133,212	2,916	3,611	393		
전 남	12									
경 북	25	20,681	18,743	1,938	18,743	1,938				
경 남	9	26,303	24,079	2,224	24,079	2,224				
제 주	1									
계	252	407,019	387,085	19,934	379,544	19,141	7,541	793		

(육용계 등록)

시도별	육용계 수	육 용 종								
		계			종계(PS)		원종계(GPS)		순계(PL)	
		계 수	우	상	우	상	우	상	우	상
대 구	26,700	24,800	1,900	24,800	1,900					
인 천	2,150	2,000	150	2,000	150					
광 주	2,700	2,400	300	2,400	300					
대 전	8,898	8,298	600	8,298	600					
경 기	1,023,884	967,478	56,406	908,794	51,208	58,684	5,198			
강 원	15,020	13,600	1,420	13,600	1,420					
충 북	139,308	131,325	7,983	131,325	7,983					
충 남	530,645	496,881	33,764	450,555	30,432	43,484	3,099	2,842	233	
전 북	141,605	129,545	12,060	121,045	10,560	8,500	1,500			
전 남	38,504	35,162	3,342	35,162	3,342					
경 북	113,416	105,401	8,015	105,401	8,015					
경 남	32,906	30,077	2,829	30,077	2,829					
제 주	6,600	6,200	400	6,200	400					
계	2,082,336	1,953,167	129,169	1,839,657	119,139	110,668	9,797	2,842	233	